

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

새누리의 진단

- 이혼율 증가 및 사회구조적 변화로 한부모 가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,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책은 여전히 미흡

새누리의 약속

-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인상 : 현재 5만원 → 15만원
- 한부모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
-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% 미만으로 확대
-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'이행강제기관'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
-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무료상담을 확대하여 건강한 가정 확립
- 아이돌보미, 방과후프로그램 등 서비스 무료 지원 등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개정
-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4년 관련 예산 확대 반영 및 사업 추진

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

새누리의 진단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율이 89%(205개/230개 시·군·구)에 달하지만, 결혼이민자 서비스 수혜율은 지극히 저조
-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, 자녀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‘찾아가는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’(현, 방문교육서비스)를 실시하고 있으나, 초기입국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미흡

새누리의 약속

- ‘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’ 파견 사업 실시
 - 입국 후 초기 1년 동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
-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‘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’ 운영 활성화
- 입국 5년 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-멘티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

새누리의 실천

- 2014년 예산 반영으로 다문화가정 초기적응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적극 지원

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

새누리의 진단

-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 등의 사각지대와 더불어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
- 이러한 상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선정 시 적용되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로부터 기인

새누리의 약속

-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,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
-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·재산·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,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 축소
-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 (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)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,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지 정책별로 통합 조정

새누리의 실천

- 2013년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시행령, 각종 지침 개정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에 따른 소요재원을 2014년 예산부터 반영

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현행 차상위계층 기준은 OECD 상대적 빈곤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을 정책대상에 포괄하는데 한계
- 맞춤형 빈곤정책에 의한 빈곤화 예방 기능이 미흡하며, 빈곤통계와 정책의 연계성이 부족

새누리의 약속

-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(현행 최저생계비 120%)을 OECD '상대 빈곤기준'에 해당하는 '중위소득 50%'로 확대 개편하여,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
 -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층방식을 유지하거나,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층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
-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

새누리의 실천

- 최저생계비 계층연도인 2013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상위 계층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개편
-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 상대빈곤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빈곤 정책별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
 - 201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소요예산 반영추진

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

새누리의 진단

-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어 차상위계층과의 소득역전 등 부작용이 있으며, 이로 인해 근로의욕 저하와 탈수급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- 특히, 탈수급시 급여 및 서비스 중단·감소와 사회보험료 등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편익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

새누리의 약속

-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‘맞춤형 급여체계’로 확대 개편
-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
 - 의료, 교육, 주거급여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, 관련 정책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
 - 문화, 에너지, 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·조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 재설계 운영

새누리의 실천

-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
-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별 급여체계 구축 및 확대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을 각 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

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

새누리의 진단

- 근로장려금의 대상을 무자녀 유배우 가구까지 확대했으나,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근로소득 수준이 낮으며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은 여전히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
- 엄격한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차상위계층과 연동되지 않는 소득기준 등을 개선하고, 근로유인 촉진을 위해 점증구간을 확대하며,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급여체계 확대 등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
-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
- 점증구간(연간 1,000만원 이상) 및 점증률(30%) 상향 조정
-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반영하고, 재산기준 완화

새누리의 실천

-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추진
- 근로장려세제, 사회보험료 지원, 자산형성지원(희망키움통장) 확대 및 연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
- '복지-고용-교육-사회서비스' 통합적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